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요약

지급개요	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(1회) 긴급 생계 지원		
지원대상	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[1유형] 소득감소 25% 이상(기준), [2유형]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(추가) *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, 소득감소,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재산6억(대도시)		
	* 지급제외 대상: 기초(생계급여), 긴급(생계급여)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*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세회망자금, 폐업점포제도전장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 등		
지급규모	(1인가구)40만원, (2인가구)60만원, (3인가구)80만원, (4인가구 이상) 100만원/1회지급		
지급수단	현금지급(금융기관 계좌로 입금)		
지원 급	방식	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 신청	현장(읍면동) 방문 신청
	신청인	세대주	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
	기간	'20. 10.12.(월) ~ 11.6(금) 18:00까지	'20. 10.19.(월) ~ 11.6(금) 18:00까지
	절차	① (보건복지부)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(증빙서류) -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(수정) ③ (지자체 - 시군구) 신청 점검 접수 처리 - 조회 ④ (지자체 - 시군구) 결정, 지급	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(증빙서류) -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(수정) ③ (지자체 - 읍면동) 신청서류접수, 행복e입력 ④ (지자체 - 시군구) 신청 점검 접수 처리 - 조회
이의 신청	기간	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	
	절차	① 복지로(온라인), 읍면동 주민센터(현장) 신청(증빙서류 포함) →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(문자발송) → ③ (시군구) 소득·재산 조회 및 조사 → ④ (시군구) 적합(부적합) 결정통보(문자발송) → ⑤ (복지로 및 읍면동) 이의신청 및 재 결정통보(문자발송) → ⑥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→ ⑦ (시군구)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→ ⑧ 사후관리	
'요일제' 운영	- 운영하지 않음.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		

I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개요

□ 추진방향

-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을 통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
-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 및 지원

□ 지원개요

가. 지원대상

- [1유형] 소득감소 25% 이상(기준), [2유형]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(추가),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재산 6억원 이하(대도시)

※ 선정기준(요약)

- 위기 사유 : 코로나19로 인한 소득(근로·사업)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[1유형] ① (근로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자
②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(매출)이 25% 이상 감소한 자
③ '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*

* '2021년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('20.9.30까지)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

* 구직(실업)급여 종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(실업)급여 종료자는 위기사유 소득감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구직(실업)급여는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. 다만, '20.10월~11월 급여수령자의 경우, 중복지원으로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

- [2유형] ① (근로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
②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(매출) 감소한 자

※ (시군구) ① [1유형] △ 25% 이상(기준대상) 우선 지급, ② [2유형] 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③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 소득·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,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

나. 지원내용

- 4인가구 기준 100만원(가구원수별 차등 40~100만원)

<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>

구 분	1인	2인	3인	4인 이상
지원수준(원)	400,000	600,000	800,000	1,000,000

다. 지원 방식 및 사업기간

- 지급대상 적정시 지원 결정처리 후 지원금 계좌입금(신청 계좌)
- '20. 9월 ~ 12월

라. 주요 추진일정

구 분	주체	업무처리 내용	일시
사업추진 준비	기재부 복지부	○추경규모(지급대상, 인원 등)	9. 6 (9월초)
↓			
추경안 정부안 확정	정부	○ 국무회의	9. 10
↓			
지급 대상자 범위 및 급여기준 등 사업(안) 제시	복지부	○ 복지부에서 지자체별 지급대상자 및 전체 대상자 범위(out-line) 제시	9. 16
↓			
지자체 지급계획(안) 마련	시·도 시군구	○ 지자체에서 기존 지원 사각지대 및 지원방안 등을 고려, 자체 지급계 획(안) 마련 ○ 시도 및 복지부에 조정 신청	~9.21
↓			
추경안 국회 확정 사업시행안 발표	국회 정부	○ 국회에서 재원/대상자 규모 확정 ○ 정부에서 시행방안 공표	9. 22
↓			
지자체 지원계획 확정, 사업홍보	복지부 및 시도, 시군구	○ 기준 : 시도, 시군구와 협의 확정 ○ 홍보 : 정확한 홍보 지향	~9.23
↓			
온라인신청 및 읍면동 현장 접수 창구 운영 (신청·조사·결정·이의신청처리)	시군구 (읍면동)	○ 비대면 신청기간 운영(5부제) ○ 중복 신청 여부 등 조사 ○ 소득재산 조사 및 적합(부적합)통보 ○ 이의신청 안내 접수 - 재신청(수정)	온라인접수 (10.12~11.6) 현장접수 (10.19~11.6)
↓			
자산 조회 및 조사	시군구	○ 자산조회 및 조사(중복 등) ○ 이의신청 조사(중복 등) 결정처리	~ 11. 12
↓			
대상자 결정 및 지급절차	시군구	○ 지급결정 및 지급명부 작성	~ 11.20
↓			
지급	시군구	○ 대상가구 명단 e호조팀으로 통보 ○ 계좌입금처리	11~12월중
↓			
사후관리	시군구 복지부	○ 부정수급 및 환수 대상자 관리	~ 12. 31

* 시스템 개발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필요시 추가시일 소요

II. 대상자 선정기준

< 핵심 사항 >

- ①(가구구성)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
- ②(위기사유)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감소로 생계곤란 가구
- ③(소득)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(재산) 대도시 6억원이하(중소도시3.5억원 농촌3억원)

1. 가구구성

- (기본원칙) '20.9.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(동거인도 포함)

※ '20년 9월 10일(정부안 발표일) 기준 9.9일 명단 적용(주민전산DB 활용)

- 주민등록기준 원칙, 단, 동거인(99코드)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
- '20. 9. 9일 현재 사망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

※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

1.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
2.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·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

- (예외인정)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배우자,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인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(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- 또한,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독립자녀로 독립자녀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%* 이상의 소득자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 감소한 경우 별도 신청·지원 가능(50% 미만 신청지원 불가)

* (1인 가구) 약 88만원, (2인 가구) 약 149.5만원, (3인 가구) 193.5만원

2. 위기사유 인정기준

[1유형]

- ① (근로소득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(25% 이상)한 경우
 - 실적·무급휴직·근로일수 감소·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- ② (사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(25% 이상)한 경우
 - 휴폐업,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(매출액)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- ③ 구직급여 종료자 : 구직급여 종료자* 중 기준월('20.9.30) 현재 미취업자

* '2021년 이후 실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('20.9.30)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

- ※ 위기사유 "③구직급여 종료자"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(실직)급여 수급중인 자 또는 신청일 현재 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,
- 위기사유 "③구직급여 종료자"로 신청한 경우 기 수령한 구직(실업)급여(2월~9월)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산정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.

[2유형]

- ① (근로소득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
- ② (사업자 등)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

※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(긴급고용지원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, 일반택사(법인택사)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, 고용대응특별지원(개인택사) 등, 구직(실업)급여 수령자 **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는 신청 지원 불가(퇴직자도 포함)**

- 전체 가구원이 생계급여(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)수급자 인 경우 - 모두 제외
- 가구원 중 일부가 복지급여대상자(기초 생계급여, 긴급 생계지원)인 포함된 경우
 - 신청 가구원에서 복지급여대상자 제외 후 조사 및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

※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본인 소득감소의 사유로 인정 불가하나,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이때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가구원에 포함하고, 가구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산정시 공공일자리소득도 포함하여 산정

3. 소득기준

- (소득기준)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- (소득산정) 본인증빙자료 및 공적자료(행복e음시스템 등)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 - 본인증빙자료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(상시일용), 사업소득(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)
 - 공적자료: ① 상기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
②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적자료로만 반영
- ※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대상(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) 가구원 소득산정 제외

<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>

(단위 : 원)

가구원 수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	100%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
	75%	1,318,000	2,244,000	2,903,000	3,562,000	4,221,000	4,880,000
	연소득액	15,816,000	26,928,000	34,836,000	42,744,000	50,652,000	58,560,000

*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

※ 가구별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은 적용하지 않음.

4. 재산기준

- (재산기준)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, 중소도시 3.5억원, 농어촌 3억원 이하
 - (재산산정) 행복e음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
 - 일반재산(토지, 건축물 및 주택 등), 기타재산(임대보증금 등)
 - 단, 재산 매각·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(이의신청 시)
- ※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대상(기초생계급여, 긴급생계지원) 가구원 재산산정 제외
- 금융재산,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.

Ⅲ. 업무처리

1. 신청 및 접수

< 핵심 사항 >

- ① 온라인 신청(인터넷, 모바일 이용) :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
 - ▶ (신청기간) '20.10.12(월) 09:00 ~ 11.6.(금) 18:00
 - ▶ (방법) 복지로(<http://bokjiro.go.kr>) 또는 모바일접속(mbokjiro.go.kr) → 휴대폰 본인 인증 → 로그인
 - ▶ (단계별 처리절차 조회) 대상자 여부, 가구원 수, 신청 절차 등
※ 금융계좌 정보 오류검증 사전 실시(결정통보 시 오류 계좌번호 안내)
- ② 현장(방문)신청: 세대주, 동일세대 내 가구원, 대리인 신청 가능
 - ▶ (신청기간) '20.10.19(월) 09:00 ~ 11.6.(금) 18:00
 - ▶ (방법)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 제출
- ③ 신청 요일제 운영 : 운영하지 않음.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

월	화	수	목	금	토	일
1, 6	2, 7	3, 8	4, 9	5, 0	휴수	짜수

□ 신청

- 온라인 신청(인터넷, 모바일) : 복지로(<http://bokjiro.go.kr>) 또는 모바일접속(m.bokjiro.go.kr)
 - (기간) : '20. 10. 12.(월) 09:00 ~ 11.6.(금) 18:00
 - (방법)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포함),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(세대원 포함) 첨부
 - (신청자격) 세대주 본인만 가능
 - (본인인증) 휴대폰 본인 인증
 - 현장(방문)신청 :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
 - (기간) '20. 10. 19.(월) 09:00 ~ 11.6.(금) 18:00 ※ 주말 신청불가
 - (방법)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 포함) 작성,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(세대원 포함) 제출
 - (신청자격) 세대주, 동일세대 내 가구원, 대리인(법정대리인 등)
 - (확인사항) 신청인 신분증(원본) 지참
- ※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음,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

□ 접수

- 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 신청 : 신청자료 행복e음시스템 전송
 - 사전 점검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등 확인
 - 점검확인 대상자에 대한 접수 완료 확인 문자(미접수처리, 보완 등 확인 문자 포함) 통보
- 읍면동 주민센터(현장) 신청 : 읍면동에서 행복e음시스템 직접 입력

□ 진행단계

단 계	주요내용
신청·접수 (온라인/현장신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복지로)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접수 ▶ (현장접수) 읍면동 서류접수 후 행복e음 입력 ▶ (읍면동) 이의신청에 의한 접수(재신청)
↓	↓
점검 (시군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시군구)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등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 구축 이전 복지로에서 점검 확인 - 현장접수 건은 읍면동에서 신청 서류접수 후 행복e음 시스템 입력 ▶ (시군구) 이의신청 안내(재신청)
↓	↓
접수 (시군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시군구) 점검결과에 따라 접수완료 후 문자 통보

2. 조 사

< 핵심 사항 >

- ▶ (소득감소 인정기준) 신청인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경우
 - 최근(20. 7~9월) 근로·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내 감소한 경우
- ▶ (소득 조사) 근로소득(상시·일용), 사업소득,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 - ※ 가구별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은 적용하지 않음
- ▶ (재산 조사) 일반재산, 기타재산, 자동차 등으로 산정
 - ※ 금융재산,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

□ 소득감소 인정기준

- (소득감소 비율) 최근(20.7~9월) 소득(월 또는 평균소득)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(비교표 ①~③) 신고한 근로·사업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

< 소득 감소 비교표 >



(참고) 평균소득 = 소득 합계액 ÷ 실제 근무월수

(예) 19년 소득합계액이 1,200만원이고, 실제 근무월이 8개월인(3월18일~10월5일) 경우
'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.(1,200만원 ÷ 8월)

※ 정부(중앙, 지자체)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소득감소 자료는 불인정

○ (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)

- 근로 소득자(상시,일용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

구분	제출서류	발급 방법 안내
근로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사업장, 국세청 국세청홈택스>My홈택스>지급명세서
	② [서식3] 고용·임금·무급휴직·소득감소확인서 + ㉠ 근로계약체결서 ㉡ 급여지급명세서 ㉢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	[서식3] 작성 → 사업주 발급 -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- 발급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 필수 포함 -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
	※'20.7~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]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'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(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)과 해당 통장의 '20.7~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(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) ※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,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	㉠~㉢ 중 제출 가능서류

- 일용근로자, 미등록 사업자(영세 자영업자 등)

구분	제출서류	발급 방법 안내
일용직 등	① [서식3-1] 소득감소확인서(인력소개소 등) ② 급여 이체 통장 사본(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 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) ③ 인력 알선업 등 월 이용내역(비교기간 범위 확인 자료) ※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,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	① ~ ③ 중 선택 가능 ※ 기타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융통성 있게 인정
미등록사업자(영세자영업자 등)	① [서식4-1] 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+ ② 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 1부(기간, 횟수 상관없음) 또는 입금내역서(주거래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) ※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,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	구비서류 1. 사업자등록증 2. 월 매출내역서 또는 거래업체 거래내역 등으로 변경

- 사업자(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)

구분	제출서류	발급 방법 안내
사업자	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·국세 청홈택스 >민원 증명 ·국세 청홈택스 >신고/납부 ·국세 청홈택스>My홈택스>지급명세서
	④ [서식4] 소득(매출)감소 신고서 + ㉠ 휴·폐업사실증명서 ㉡ 매출진표 ㉢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㉣ 통장 사본	[서식4] 본인 작성 · 국세청홈택스>민원증명 · 사업장별 카드사 ·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
	※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,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	㉠~㉣ 중 제출 가능서류

□ 소득 조사

- 근로소득(상시·일용), 사업소득,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 ※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 등은 적용하지 않음
- [서식1] 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
 -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(세대원 포함)
 - 감소한 근로·사업소득 + 공적 자료 소득(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) 반영
 -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
 -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(근로·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)
 -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
 -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

< 가구소득 산정표 >

$$\text{가구소득} = \text{근로소득} + \text{사업소득} + \text{기타 소득}^* - \text{차감 지출 반영하지 않음 (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)}$$

*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(수당, 연금, 급여), 재산소득 등

*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수지출 비용 반영하지 않고, 가구 전체 소득에서 감소비용 적용

< 가구 소득 산정내역 >

소득	내용
• 근로소득	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
• 사업소득	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그 밖의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)
• 재산소득	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
• 그 밖의 소득	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, 연금, 급여,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

※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

□ 재산 조사

- 일반재산, 기타재산, 자동차 등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조사
 - 금융재산,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
 -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(cut-off) 판단

< 가구 재산 산정표 >

$$\text{가구재산} = \text{재산} + \text{일반재산} - \text{부채}$$

↓

$$\text{금융재산} = \text{미반영}$$

※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

일반재산: 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(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범위)

금융재산: 미반영

< 가구재산 산정내역 >

재산 항목	산정 기준
• 토지, 건축물, 주택	(지방세법)시가표준액(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)
• 임차보증금	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(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.95)
• 선박, 항공기	(지방세법)시가표준액 × 보정계수(3.5)
• 가축·종묘 등의 동산	조사일 현재 시가(신고가액)
• 입목재산	(지방세법)시가표준액
• 각종 회원권	(지방세법)시가표준액
• 조합원 입주권	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
• 어업권	(지방세법) 시가표준액
• 자동차	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※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

※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

* '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('20년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)

3. 결정 및 이의신청

□ 결 정

< 핵 심 사 항 >

- ▶ (결정)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*으로 적합·부적합 여부 결정
 - * 소득 감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.5억 농어촌 3억이하
 - (1차통보) 적합·부적합 여부 통지(부적합 시 사유 내용 포함) 및 이의신청 안내
 - (2차결정)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후 결정 통지
- ※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필요 시(마감 후)

-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해 (1차)적합·부적합 통지 및 (2차) 결정통보(SMS 문자통보 등)
 - 공적·소명 자료로 확인된 소득 및 재산자료, 본인이 신고한 소득 감소 비율 등으로 선정기준 적합·부적합 유무 확인
 - 부적합 통보시 사유 내용(소득·재산 초과, 중복 신청 등) 및 이의신청 안내 포함
 -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(정보원 일괄) 지급결정(적합 및 부적합) 통보(입금예정일, 지급금액, 문의전화)

○ 시군구 내 우선 순위 결정

(우선순위)

- ① 1순위 △ 25% 이상 우선 지급(기준)
- ② 2순위 이외 소득 감소자 중(추가)
- ③ 시군구 예산범위 내
- ④ 소득·매출 감소율이 높은순

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

□ 이의신청

< 핵심 사항 >

- ▶ (신청기간)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
- ▶ (이의신청 내용)
 - 소득/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(수정)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
 -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·조정 재(수정)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
- ▶ (접 수)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
- ▶ (처리기관) 시·군·구청

□ 처리 절차

단 계	주요내용
이의신청·접수 (온라인)	▶ (복지로)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추가 첨부 (현장접수 건은 읍면동 신청 후 행복e음 입력)
↓	↓
조정·수정 (시군구)	▶ (시군구) 소득/재산, 가구 및 가구원 조정
↓	↓
결정·통지 (시군구)	▶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문자 통보 ※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추후 별도 추가 지급
↓	↓
지급대상 검증 (시군구)	▶ 제외대상(복지급여 대상 및 코로나19 맞춤형 긴급 지원 사업대상자 등) 명단 재검토 및 최종확인

- **읍면동** : 신청서 및 증빙서류 행복e음시스템 전달(1일 이내)
- **시군구** : 소득·재산, 가구분리 및 가구원 변동내역 확인하여 결정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 통보 → 지급결정 대상자 통보

4. 지급

< 핵심 사항 >

- ▶ (지급대상자)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(이의신청 후 결정 대상자 포함)
- ▶ (지급방식) 신청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

□ 계좌 지급

-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 계좌입금
- (금융계좌)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지급가능(적금, 정기예금, 펀드, 압류계좌는 입금불가)
- ※ 단,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세대원이 금융기관 계좌이용 불가 시 대리인계좌로 입금가능 (대리인(제3자)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*, 통장사본 필수제출)
- * 신분증(원본) : 주민등록증(외국인등록증), 운전면허증, 여권

□ 처리절차

단 계	주요내용
시군구 TF팀	▶ 지급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 명부 작성 *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인
↓	↓
e호조 팀	▶ 지급대상자 지급처리 - 신청인이 요청한 지급계좌로 현금 입금
↓	↓
시군구 TF팀	▶ 지급 처리결과 확인 등

5. 사후관리

< 핵심 사항 >

- ▶ (지원일 기준) '20.9.9. 기준 세대주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지급 원칙
- ▶ (환수대상) ① 행정착오·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

□ 집행 및 정산

- 집행범위 :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, 시군구 및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, 기타운영비

※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

□ 환 수

- 환수주체 : 시·군·구청장
- 법적근거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
 - 긴급복지지원사업 준용

서식4-1

소득(매출)감소 본인 신고서

소 득(매 출) 감 소 신 고 서				
신고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최근 하고 있는일	판매물품	예)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 등을 작성		
	장소(지역)			
	주 거래처	업체명		
		주소 및 연락처		
소득감소 내용	예) 영업일 감소, 매출 감소 등 작성			
소득	최근 소득(매출) ('20년. 7월~9월 월' 또는 평균)	비 고 소 득 (본 인 선 택)		
		① '19년 중 월' 소득(매출) (1월~12월)	② '20년 1~6월 월' 소득(매출) (1월~6월)	비고
	원	원	원	*제시된 기간 중
*제시된 기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월의 소득을 택하여 비교소득은 ①, ②중 1곳에만 기입 가능				
<p>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(매출)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고자 : (인)</p>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구비서류	- 월 거래내역서(거래내역, 입출금 통장 등 증빙서류 제출) -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,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			
※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,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.(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)				